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개정안내

- 고 시 : 제2008-83호
- 공포일자 : 2008. 7. 1
- 담당부서 : 전력산업팀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협회(www.keea.or.kr)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PQ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를 선정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에 따른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현장의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또는 3월 이상 공사중지를 확인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PQ고시에서 감리원은 민간 발주자 및 공공기관 발주자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하고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기존 공사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2007. 12. 31)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감리원 활용(안 제10조의3제10항 신설)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시·도지사가 공고한 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3월 이상 공사중지가 된 경우로써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하도록 함

#### 나.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인정기준 명확화(안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 부표 3-1 제1호가목)

-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함

### ◎ 시행일 및 적용례

가.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선정되었거나 공고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1), [부표 3-1] 제1호가목(2) 및 나목(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공고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	<p>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
<p>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생략)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 안에서 <u>산업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u>지식경제부장관</u>-----            -----.</p>
<p>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⑨(생략)  <u>&lt;신설&gt;</u></p>	<p>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⑨(현행과 같음)            ⑩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에 정일로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
<p><u>&lt;신설&gt;</u></p>	<p><u>부칙</u>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선정되었거나 공고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1), [부표 3-1] 제1호가목(2) 및 나목(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공고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다. (생략)            라. 참여전력기술인의 발주자·감독기관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u>&lt;단서 신설&gt;</u></p>	<p>[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u>-----            -----            -----<u>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u></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라. 참여전력기술인의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p> <p>※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p><b>[부표 2-1]</b>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p> <p>가. ~ 다. (생 략)</p> <p>라. 참여분야직무 실적평가 (중 략)</p> <p>(1) 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단서 신설〉</p> <p>(1) 공사감독 :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p> <p>※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2) (생 략)</p> <p>마. (생 략)</p>	<p><b>[부표 2-1]</b>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1) <u>공사감독</u> : -----<u>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u>-----.</p> <p style="text-align: center;">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p> <p>〈삭 제〉</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마. (현행과 같음)</p>
<p><b>[부표 3-1]</b>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p> <p>(1) (생 략)</p> <p>(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단서 신설〉</p> <p>(2)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이하 이 부표에서 “발</p>	<p><b>[부표 3-1]</b>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p> <p>1. -----.</p> <p>가. -----</p> <p>(1) (현행과 같음)</p> <p>(2) -----<u>발주자</u>-----.</p> <p style="text-align: center;">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p> <p>〈삭 제〉</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 (2) (생략)

(3) 발주자등의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단서 신설>

라. (생략)

[별표 4]

설계 · 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 ·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 · 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생략)

<신설>

<삭제>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 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라. (현행과 같음)

[별표 4]

설계 · 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

가.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

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중, 세대	㎡		
2. 감리업자					
주 소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3. 확인사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 ✓ )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3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3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3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인		

210mm × 287mm(단면용지 60g/㎡(제책용종))

#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 01

규칙 제41조 1항 마 목에 대한유권해석 질의이옵니다. 규칙에 의하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중 둘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키로와트미만인 전기설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가목이 1250 키로와트 나목이 400키로와트 합계가 1천650키로와트인 경우 대행사업자에게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는 가목에서 라목 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 특히 합계 용량을 2,500kw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전기설비는 규모가 크고 설비가 복잡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만 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1,250kw라면 시행규칙 제41조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에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 02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시부득한 사유(해임자의 출국, 무단결근, 사망 등)에 의하여 해임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시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임자의 자격증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국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및 사유서 등을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선임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기존 A공장 수전설비 용량이 1900KW 에서 한울타리 내 B공장 300KW를 증설로 총 한전계약용량이 2,200KW입니다.

A공장 건물관리용역회사에서는 기존설비 (1900KW)를 관리하여 왔으나, B공장 300KW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B공장은 건물용역관리를 이업체에 위탁하지않고 직영관리함)

B공장변압기 용량 22,900/380V, 300KW 를 B공장 자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경우 300KW에 대한 별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A공장 관리 용역 업체 전기안전관리자가 2,200KW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선임되어 있습니다.

질의1) A공장 2,200KW선임 B공장 300KW선임 이중선임 가능여부

질의2) A공장 1,900KW선임 B공장 300KW 선임 가능여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갑님께서 질의하신 수전설비 형태는 기존설비 1,900kW인 A공장에서 300kW를 B공장에서 사용하고자 추가로 설치하여 총 수전설비용량 2,200kW인 경우로 생각되며
- 이 경우 수전설비를 A, B공장에서 공유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1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관리주체가 다르다하여 질의내용과 같이 이중선임 또는 분할하여 각각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한전과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모자거래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유자등이 서로 합의하여 모자로 구분(모측1900kw/자측 300kw) 선임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다만, 수전설비가 한울타리 내에서 추가로 설치한 300kW가 별도의 수전설비 형태로 시공되었다면 질의2와 같이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 0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6조(직접인건비)제6항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동 요령 제1조(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 02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 ~19kW)가 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 03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이 1억원정도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제외대상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규모 및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력시설물공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므로 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23)

# 04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단서조항에서는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600V)인 경우의 공사일지라도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또한, 단서 나목에서는 전력시설물 공사가 저압(600V미만)공사일지라도 전력시설물의 사전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5천만원)이상의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 감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생활속 법령상식

**전원주택 부지용 임야를 지분매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분양회사가 거꾸로 중도금을 선입금하면 3개월 내로 건축허가를 받게 하여 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글 \_ 박중복 변호사

**Q** 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전원주택 부지용 임야 150평을 7,500만원에 지분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불하였다. 계약금 지불후 관할관청에 문의하였더니 위 임야에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다고 확인하여 주어서 분양회사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분양회사는 오히려 중도금 2,000만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내로 건축허가를 받게 하여 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역제약한다. 중도금을 지급해도 좋은가?

**A** 먼저 당초의 계약서상에는 분양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약 당시 분양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였다는 점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귀하는 위 조건의 불성취 또는 실현불가능한 조건으로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분양회사는 중도금 2,000만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내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겠다고 역제약하고 있다. 만약 각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도금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귀하가 관할 관청에 확인한 바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분양회사가 이를 장담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중도금 2,0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더욱 이상하지 않은가? 최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임야를 소규모 지분으로 쪼개어 단기간 내에 판 뒤 회사를 사실상 청산시켜 버리는 일부 토지분양업자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회사의 장담을 선불리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칫 돈 2,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가 결국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귀하는 계약금 800만원 및 중도금 2,000만원까지 날려버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귀하가 훗날 분양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회사가 재산이 없다는 판결문이 휴지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양도소득세

#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글 | 정태화 세무사

## 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

도 다시 그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이 경우에는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다음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미제출 ② 신용카드 부실기재 분(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③ 접대비 관련 ④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 취득 ⑤ 면세사업 관련 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2.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 신용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유 신용 씨의 지금까지의 신고 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점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2)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종은 6/10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 신용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원 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1,698,113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